

-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662
------------	------

2017년 4월 2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2월 16일, 성백진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백진 의원)

가. 제안 이유

- 최근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행 법령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규정을 기존 과태료 체납자에게 일정기한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나. 주요골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도로교통법」 이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이내로 감경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50% 감경해주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치구별 체납 정리반 편성, 독촉고지서 발부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액은 약 38만 2,099건 감소했으나 체납건수는 오히려 18만 3,398건 증가하고, 징수율 또한 86.3%에서 75.5%로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은 52억 53백만원 늘어난 실정이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상위 30명을 보면 31백만원에서 7백만원에 까지 이르는 등 상위 30명의 체납액만 3억 4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체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일정기한을 두고 그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수정 필요
 - 일률적인 체납금 탕감시 자진 납부의지 약화와 의도적 체납 행위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별적이고 한시적인 체납금 경감 방안 및 법령안의 건의 필요

라. 이 송 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자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규정을 기존 과태료 체납자에게 일 정기한을 두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¹⁾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행정청은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건수가 약 18만 3,977건 증가한 것에 반해 체납건수는 22만 6,246건 증가하였고 징수율 또한 90.27%에서 80.36%로 감소하여 체납액은 122억 35백만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참고 :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	2,967,331	109,426	2,426,495	87,931	540,836	21,495	80.36
'15	2,723,996	101,119	2,356,003	88,356	367,993	12,763	87.38
'14	2,557,108	95,152	2,242,518	85,892	314,590	9,260	90.27
3년간	410,223	14,274	183,977	2,039	226,246	12,235	-

1)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매년 체납정리반 편성,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상위 30명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건수가 5,882건, 체납액만 3억 40백만 원에 이르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참고 :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자 현황(상위 30명)

(단위 : 건, 원/ '16.10월말 기준)

연번	성명	대표 차량번호	납부 현황		체납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주)○○○이송단	서울71고****	711	50,920,420	504	31,170,000
2	(주)제○○○투어	서울72바****	642	36,988,360	410	24,102,960
3	주식회사○○○투어	경기79사****	575	33,021,840	399	23,288,280
4	합자회사○○○투어	서울74바****	857	39,920,430	314	18,179,640
⋮			⋮			
30	(주)서울○○○	경기77아****	70	3,695,200	120	6,851,520
계			12,458	526,747,990	5,882	340,044,120

- 또한 고액체납자들은 차령초과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자진말소하고, 행정청은 차량말소로 인해 체납액이 시효결손되는 등의 체납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일정기한을 두고 체납액을 경감시킬 경우 기존 체납자의 과태료 자진 납부 의지를 독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 및 시효결손 감소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만, 체납액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은 의도적 체납 발생 등의 도덕적 해이 및 다른 과태료 납부 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도로교통법」 이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 이내로 감경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50% 감경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액은 약 38만 2,099건 감소했으나 체납건수는 오히려 18만 3,398건 증가하고, 징수율 또한 86.3%에서 75.5%로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은 52억 53백만원 늘어난 실정이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상위 30명을 보면 31백만원에서 7백만원에 까지 이르는 등 상위 30명의 체납액만 3억 4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서울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치구별 체납 정리반 편성, 독촉고지서 발부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을 계속해서 미루다 차령초과시 차량을 자진 말소하여 그간의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행정청은 차량 말소로 인해 그간의 체납액이 시효결손되는 등 체납의 악순환은 계속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일정기한을 두고 그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17. 2.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일동